

# 자격이 되는 건강 보험 가입 방법

## 귀하의 이민 신분 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귀하와 가족의 건강 유지를 위해 건강 의료보험 혜택을 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Covered California에서 다양한 의료보험 플랜을 비교분석하여 가입하고, 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 재정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의료보험을 신청하시게 되면 보험료 할인 및 Medi-Cal에 가입할 자격에 대한 여부를 손쉽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 국민, 또는 "합법적 거주자"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이민 신분을 가진 분들도 은 Medi-Cal을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혜택은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의료보험 가입을 신청할 경우 귀하의 모든 개인 정보는 안전하게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Covered California 는 전국 이민법 센터 (*The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아시아 태평양 커뮤니티 보건기구협회 (*The Association of Asian Pacific Community Health*), 아시아계 미국인 정의 실현 - Los Angeles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 Los Angeles*), 아시아계 미국인 정의 실현 - AAJC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 AAJC*), 보건정의를 위한 행동 (*Action for Health Justice*), 아시아 및 태평양 도민 미국 보건 포럼 (*Asian & Pacific Islander American Health Forum*), 로스앤젤레스 이민자 인권 연합 (*Coalition for Humane Immigrant Rights of Los Angeles*), 캘리포니아 이민자 정책 센터의 (*California Immigrant Policy Center*)와 같은 여러 단체와 제휴하여 더욱 많은 거주자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의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면 보험 가입을 장려합니다. 의료 보험 가입 신청은 이미 신준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귀하의 이민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보호됩니다

Covered California 또는 저희 파트너(공인된 보험 설계사, 공인된 가입 상담사, 복지 서비스 기관에 근무하는 카운티 적격성 담당자가)를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하실 경우 보험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의 이민신분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필요합니다. 제출된 모든 이민 관련정보들은 비밀로 안전하게 유지되며,<sup>1</sup> 이민 당국이 이민법 집행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sup>2</sup> 귀하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오직 Covered California 또는 Medi-Cal 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혜택의 자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만 사용됩니다.<sup>3</sup>

Covered California 를 통해 의료 보험에 가입하실 때, 영주권 번호, 시민권 번호 또는 노동허가증 (EAC 카드 번호) 등 가입자의 이민 신분을 증명할 만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서류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거나 온라인상으로 제출하시게 됩니다. 귀하의 이민 정보와 서류는 항상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 다른 사람을 위해 의료보험을 대리 신청할 경우, 본인의 이민 신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예: 자녀)을 위해 의료 보험 가입을 신청하실 경우 귀하 자신의 이민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sup>4</sup> Covered California는 해당 가족의 재정 지원자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회보장번호(SSN)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보험 보장 신청을 위해 반드시 SSN를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sup>5</sup> SSN이 없으실 경우에도, 귀하의 위해 의료 보험을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격이 되는 건강 보험 가입 방법

## 귀하의 이민 신분 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이민자 및 서류미비 가족 구성원에게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귀하가 Covered California에 제공하는 정보는 이민법 집행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귀하의 가족구성원이 서류미비 이민자, 임시보호상태(TPS)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deferred action)와 같은 임시 자격을 갖춘 이민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고 작용합니다. 2013년에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보험 혜택 자격 판단을 목적으로 확보한 [이민 관련] 정보를 민사상 이민 단속 조치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습니다.<sup>6</sup> 즉 신청서에 기록된 모든 정보는 안전하게 비밀로 유지되며 이민 단속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Covered California에 신청이 귀하의 이민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Covered California 의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이민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정부의 생활 보호 대상자 또는 공공 보조자”란 수식어가 붙거나 합법적인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가 되는 데 해가 되지 않으니 영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sup>7</sup> 다만, Medi-Cal를 받는 특정 소수의 분들에게 적용되는 한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Medi-Cal를 통해 장기요양혜택을 받는 분들은 영주권을 받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유의사항: 귀하또는 귀하의 가족이 Medi-Cal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세요.

Covered California 에서 제공되는 의료 보험은 서류미비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에게는 가입 자격이 중어지지 않으나 특정 Medi-Cal 프로그램에 대해 제한적으로 가입 자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구비한 모든 이민자는 이민 신분에 상관 없이 응급 처치에 대한 Medi-Cal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나 귀하 가족들 모두 신청하여 어떤 의료 보험 옵션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DACA)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받은 분들은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의료 보험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sup>8</sup>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Medi-Cal가입 승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의료보험 혜택에 대한 상세정보는 [www.CoveredCA.com](http://www.CoveredCA.com)을 방문하십시오. 이 웹사이트에서, “지역별 지원처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원하시는 언어로 귀하의 문의에 답할수 있는 무료 공인 등록 상담사나 공인 등록 상담사나 공인 보험 대리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전화 (800) 300-0516 (영어), (800) 300-0213 (스페인어), (800) 300-1533 (중국어), (800) 738-9116 (한국어), (800) 652-9528 (베트남어)로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서를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www.coveredca.com/news/PDFs/immigration-fact-sheet-ca-kor.pdf](http://www.coveredca.com/news/PDFs/immigration-fact-sheet-ca-kor.pdf)

<sup>1</sup> 환자 보호 및 의료비용 합리화법 2010, Pub. L. No. 111-148, § 1414 (2010); 45 C.F.R. 155.260(a)(1)(2014); Covered California 개인정보 보호 실무 공지, 웹사이트: <http://www.coveredca.com/privacy>; 42 U.S.C. § 1396a(a)(7)(2012); 26 U.S.C. § 6103(2012) 참조.

<sup>2</sup> 특정 의료보호 정보에 관련된 기존 실무의 명확화, 미국 이민관세 수사청 (2013년 10월 25일), 웹사이트: <http://www.ice.gov/doclib/ero-outreach/pdf/ice-aca-memo.pdf>.

<sup>3</sup> 45 C.F.R. § 155.260(a)(1)(2014).

<sup>4</sup> 45 C.F.R. § 155.310(a)(2)(2014).

<sup>5</sup> 45 C.F.R. §§ 155.305(f)(6), 155.310(a)(3)(ii)(2014).

<sup>6</sup> ICE Clarification of Existing Practices, supra.

<sup>7</sup> 공공 부담 사유에 대한 추방사유와 입국거절사유에 대한 현장 안내지침, 이민귀화국, 법무부, 64 Fed. Reg. 28689, 28692 (1999년 5월 26일); 공공 부담 팩트 시트, 이민국, 국토안보부 (2013년 11월 15일 개정), 웹사이트: <http://www.uscis.gov/news/fact-sheets/public-charge-fact-sheet> 참조.

<sup>8</sup> 재닛 나폴리타노의 메모, 미국에 입국한 아동에 관한 기소적 재량의 행사, 국토안보부 (2012년 6월 15일), 웹사이트: <http://www.dhs.gov/xlibrary/assets/s1-exercising-prosecutorial-discretion-individuals-who-came-to-us-as-children.pdf>; 45 CFR §§ 152.2, 155.20, 155.305(a)(1)(2014).